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I)*

최지현

1. 미국

개요

미국 식품행정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철저히 유지, 투명하고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 국민의 참여 증대, 식품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보완적이며 의존적인 협조형태 유지가 있다.

미국의 식품안전관리는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구들이 상호 복잡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도는 35개의 법률·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개 연방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식품관련행정은 크게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업무와 식품의 품질관리 업무로 크게 구분된다.

미국 식품행정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첫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철저히 유지한다는 점이다. 식품에 대한 업무를 특정기관이나 조직으로 권한이나 책임을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켜 철저하게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투명하고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집행은 투명(transparent)하여야 하고, 그 근거는 과학에 기초(science-based)하여야 한다. 셋째는 국민의 참여를 증대시킨다. 식품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의 제정, 식품 판매나 유통 이슈를 정책화할 때 국민의 참여(participation)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식품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

* 본 내용은 「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jihchoi@krei.re.kr, 02-3299-4316)

부가 상호 보완적(complementary)이며 의존적(interdependent)인 협조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식품안전행정업무는 1862년 농무부(USDA)가 설치되면서 부내 화학국(a Bureau of Chemistry)에서 담당하였다. 1953년 USDA 내 동물산업국(BAI)과 식물방역국 기능을 농업연구청(ARS)으로 통합하면서 ARS가 식품안전업무를 총괄하였다. 1971년에는 동식물 방역 전담기관인 동식물방역청(APHS)이 신설되고, APHS는 1972년 농업유통국(AMS)으로부터 식육·가금육검사기능을 흡수하여 동식물검역청(APHIS)으로 개편되었다.

1977년 APHIS로부터 식육·가금육검사기능을 분리하여 식품안전품질청(FSQS)이 신설되었고, 1981년에 식품안전검사청(FSIS)로 개칭되었다.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은 E.coli O157:H7 검출사건으로 식품안전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내각에 식품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하면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8년 8월 전미과학위원회(NAS)는 국회의 요청으로 “안전한 식품보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식품안전조직의 통합(일원화 등)을 제안하였다. 2004~2005년에도 상하원 공동으로 식품안전조직 일원화를 발의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식품안전관리 논의 동향

미국은 농무부(육류, 가금류, 알가공품), 상무부(수산물), 환경청(농약), 식품의약품청(대부분의 식품)으로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운용해 왔다. 위험평가 업무도 농무부(동·식물 전염병, 축산물 위생), 식약청(화학물질·미생물), 환경청(농약) 등으로 소관별로 분산 수행하고 있다.

그간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검토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바마 정부 방침도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 최근 땅콩버터에서 살모넬라 오염 등 잇단 식품사고로 식약청의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2005년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미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 기관, 업무, 법령 등 안전관리 시스템의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식품안전이슈가 12개 기관, 30개 이상의 법령에 의해 복잡하게 규제되고, 관련기관에 따라 규제가 다양화되어 있으며, 집행권한이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O는 보고서에서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위해에 기초한 식품안전법령의 제정과 일원화된 식품안전기구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2007년 GAO 연차보고서에서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제기되었다. GAO는 보고서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험성이 높은 29개 연방정부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연방정부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어

미국은 농무부(육류, 가금류, 알가공품), 상무부(수산물), 환경청(농약), 식품의약품청(대부분의 식품)으로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운용해 왔다.

비일관적 감시체계, 비효과적 협조체계, 비효율적 자원의 이용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GAO는 의회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전에 식품사고 및 오염에 대해 신속히 탐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 미국 의회는 110차 의회에서 식품안전성 관련 의제로 식품안전위원회 설치와 새로운 식품안전기구의 출범을 채택하였다. 상원에서 통과된 Fram bill(H.R.2419)의 내용에는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정부기관들의 식품안전성관련 요구사항들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식품안전위원회(Congressional Bipartisan Food Safety Commission)를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검증 프로그램 및 완료시한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연간 3백만 달러의 예산도 배정하였다.

새로운 식품안전기구로 식품안전청(Food Safety Administration:FSA)의 구성도 제안하였다. FSA는 모든 식품안전성 관련 법안을 관할하며, FSIS, APHIS 등의 기능과 식품안전성 관련 연구, FDA의 CFSAN(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VM(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와 기타 식품안전성 관련 기능, EPA의 살충제 잔류 관리업무, NMFS의 수산물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논의 외에도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우선 수입 농산물이 미국 반입되기 이전에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으로 농산물 수출하는 국가 또는 관련기관들은 수출이전에 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안전성 인증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 수출국의 검사비용 부담 등을 제기하였다. 종전에는 FDA, FSIS 등이 리콜 명령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식품의 리콜, 이력추적 담당 기관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의회는 FDA와 FSIS의 리콜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식품안전성 관련 예산과 인력 부족문제, 동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제한, 신선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주에서 검사된 육류와 가금류에 대한 주외부 판매 허가,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감시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신선농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06년 캘리포니아 시금치, 양상추의 E. coli O157:H7 박테리아에 의한 오염사태에서 보듯이 식품원인질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농무부 장관도 2009년 2월 ‘산업국가중 미국만 이원화시스템을 갖고 있어 식품행정일원화가 필요하고, 식품안전이 농민소득을 보전하는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GAO는 차기 111회 의회 의제로서 식품안전시스템의 정비에 논의 중요성을 제기한바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의회보고서도 식품안전시스템의 재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farm bill에 110차 의회에서 양당이 초당적으로 제기한 식품안전위원회(Congressional Bipartisan Food Safety Commission)의 출범이 포함되지 못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독립기관인 FSA의 설립이 추

미국으로 농산물 수출하는 국가 또는 관련기관들은 수출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안전성 인증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 수출국의 검사비용 부담 등을 제기하였다.

진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의 비효율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 식품안전 일원화 논의는 오바마 정부기간 중에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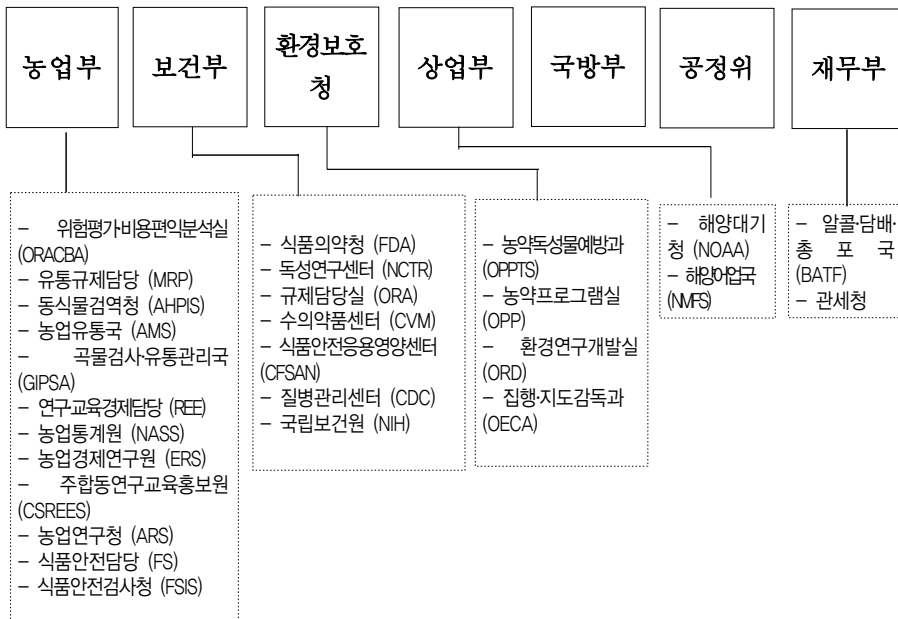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4일 라디오 연설에서 식품안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식품안전실무그룹(FSWG)의 신설을 지시하였다. 식품안전 실무그룹은 보건성과 농무성장관이 의장이 되어 미국의 식품안전법을 개선을 임무로 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이후,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FD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내 정치그룹의 다양성으로 볼 때 보건부 중심이 될지, 농업부 중심 또는 새로운 기관이 신설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식품안전관련 조직체계

미국의 식품안전관리는 농식품의 성격에 따라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와 질병 통제 및 방역센터(CDC),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청(FSIS)와 동식물방역청(APHIS), 환경보호청(EPA), 상업부 국립수산물검사청(NMFS) 등 7개 부처, 12개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4일 라디오 연설에서 식품안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식품안전 실무그룹(FSWG)의 신설을 지시하였다. 식품안전 실무그룹은 보건성과 농무성장관이 의장이 되어 미국의 식품안전법을 개선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미국의 식품안전관리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와 질병 통제 및 방역센터 (CDC),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청 (FSIS)와 동식물방역청(APHIS), 환경 보호청(EPA), 상업부 국립수산물검사청 (NMFS) 등 7개 부처, 12개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식품안전관리기구 양대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업부처와 보건부처로 이원화되어 있다. 축산식품은 농업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FSIS) 및 동식물방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에서 담당하고 일반식품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수산물은 국립수산물검사소(NMFS)에서 담당한다.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미 농무부 산하의 식품안전 관리 기관으로 최대의 예산과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FSIS는 예방시스템인 HACCP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살전후에 식용 동물의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 육류 도살자 및 가공공장에 대한 검사, 달걀 가공제품의 모니터링 및 점검, 육류제품의 조리 및 포장, 공장위생, 열처리 및 기타 가공절차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 및 기타 재료 사용의 생산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육류 미국 수출 해외 육류 가공공장 검사 및 확인, 불량제품을 생산한 육류가공업체의 자발적인 제품회수 유도, 각 주의 검사프로그램 감시와 평가, 미생물 오염 등 위생기준과 제조규범 등을 설정한다.

미국의 식품안전관리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와 질병통제 및 방역센터(CDC),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동식물방역청(APHIS), 환경보호청(EPA), 상업부 국립수산물검사소(NMFS) 등 7개 부처, 12개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다.

표 1 미국 FSIS(식품안전검사청)의 조직

인권특별사무실 식품안전검사청장(FSIS) 미국 CODEX	식품방어비상 대응실	과학·기술지원담당, 바이오예찰·비상 대응담당, 지역사무소 (5)
	계획평가·집행·감독실	내부관리담당, 계획평가·개선, 평가·집행과 지도·조사과, 심사담당
	공보·교육·홍보실 (OPAEO)	국회공보실, 식품안전 교육담당, 행정대응·현안관리과 전략구상·협력·홍보담당
	국제담당실 (OIA)	국제동등성 담당, 수출입 프로그램 담당 수입검사과, Codex담당, 지역수입 검사소(5)
	공중보건 과학실 (OPHS)	관리지원담당, 인수 공통 질병·잔류물질에찰과, 미생물과, 보건과학과, 위험평가과, 동부연구소 중서부연구소, 서부연구소, 연구소 QA/QC과 식품비상대응네트워크과
	관리실 (OM)	행정지원과, 정보담당, 인권과, 계획시찰보안과 인적지원담당과, 정보지원과, 자료관리과, 노사관계 재정담당관, 중재·후생복지과, 예산담당과
	현업 관리실 (OFO)	주정부 프로그램 연락담당, 자원관리·계획담당 규제담당, 지방사무소 (15), 식품회수 관리 담당
정책·계획·인력 개발실	프로그램개발, 신기술담당, 검사·집행 구상담당 기술지원센터, 정책분석·입안 자료분석·통계지원담당 기술분석담당, 규정·정원 정책담당, 지침·경제 분석담당 표시·소비자 보호담당, 인력개발센터	

동식물검역청(APHIS)은 미국의 식물 및 동물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동물수의국(Veterinary Services)에서는 미국의 동물, 육류의 위생, 품질, 시장성을 높이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동물수의국은 미국축산물의 위생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NAHMS(National Animal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 동물 질병의 수준 측정, 축산농가들에 대한 해외질병에 대한 경보 발령, NAHNS를 통한 새로운 질병징후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한다.

동식물검역청(APHIS)은 미국의 식물 및 동물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동물수의국(Veterinary Services)에서는 미국의 동물, 육류의 위생, 품질, 시장성을 높이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표 2 동식물검역청(APHIS)의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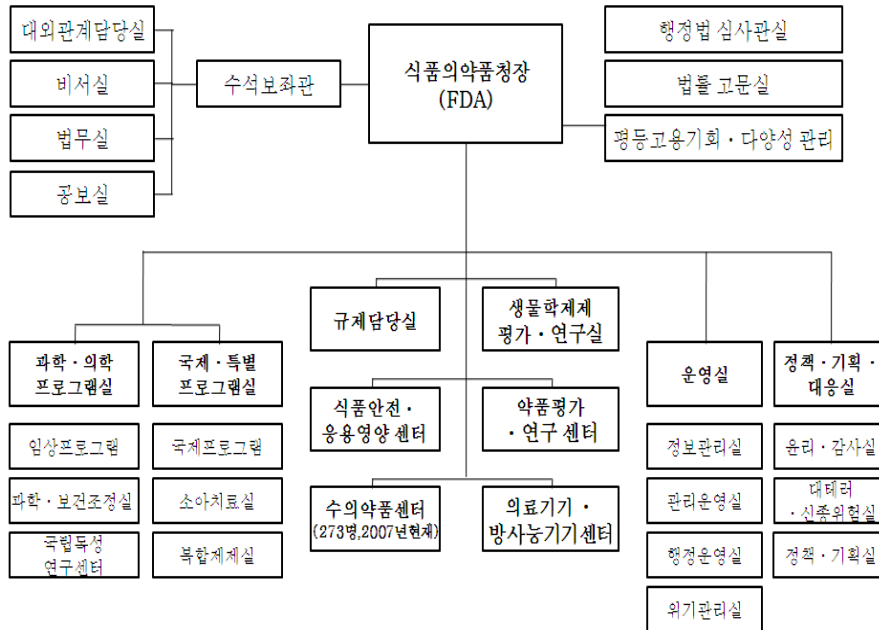
		정책·프로그램개발실
인권집행·지도담 동식물검역청장 (APHIS) 비상관리·국토안	유통·규제사업실 (MRPBS)	행정지원과, 복리후생과, 재정관리과, 인적자원과, IT과, 조사·집행과
	법률·공보실 (LPA)	부실장실, 공보담당, 의사소통 담당, 정보공개 담당
	야생 동물실 (WS)	운영지원 담당, 동부지역 사무소, 서부지역 사무소, 주 정부WS 프로그램, 야생동물연구센터
	수의국(VS) (1,787명)	부국장, 관리지원과, 기획·전략과, 인사기획과, 직업개발과, 정책담당관, 역학·방역센터, 수출입센터, 방역프로그램센터, 동부지역수의관(25), 수의국지역사무소(41), 현업운영담당관, 동부지역담당관, 서부지역담당관, 과학담당관, 비상방역관리센터, 국립수의연구소, 수의생물학제센터, 서부지역수의관(22)
	식물보호 검역국 (PPQ)	수석보좌관, 행정지원팀, 인력개발센터, 자원관리담당, 서부지역사무소, 식물방역프로그램, 비상·국내 프로그램, 식물방역·과학기술센터, 동부지역사무소
국제지원국 (IS)	실행계획·국제지원 부국장, 유럽·아프리카·미주 부국장, 운영지원과, 무역지원과, 서방무역과, 아시아 1과, 미주과, 유럽·아프리카과, 아시아2과	
생명공학 규제실 (BRS)	과학실, 정책조정담당, 규제환경분석과, 정보국제관계과, 동물과, 환경위험분석담당, 식물과, 병해충보호제과, 규제운영담당, 지도검사과, 문서관리과	
		동물보호실 (AC)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회수 모니터링, 식품안전 연구 수행 및 식품업계 및 대소비자 교육 실시 등을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회수 모니터링, 식품안전 연구 수행 및 식품업계 및 대소비자 교육 실시 등을 수행한다.

주요업무는 시장출하 전 식품 및 색소첨가제의 안전성 재검사, 식품제조용 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사료의 안전성 모니터링, 식품공장 위생, 식품포장 여건, 위험분석 및 HACCP 기준 확립, 식품, 사료, 동물용의약품, 첨가물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불량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요청, 식품회수 모니터링, 식품안전에 대한 연구수행, 식품업계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취급방법 교육 실시가 있다.

그림 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체계(2008.05)



환경보호청은 1970년에 설립되었는데, 식수의 안전기준 설정, 독성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주 (state)의 식품품질 관리 지원, 농약의 안전성 결정, 식품의 농약잔류 허용치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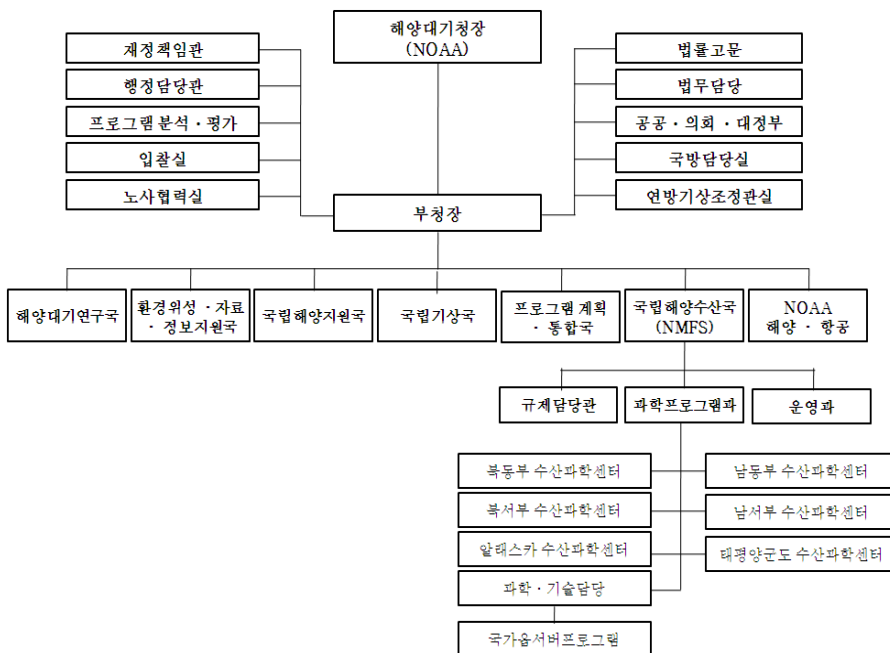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1970년에 설립되었는데, 식수의 안전기준 설정, 독성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주(state)의 식품품질 관리 지원, 농약의 안전성 결정, 식품의 농약잔류 허용치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인원은 워싱턴 D.C의 중앙본부와 12개 연구소, 10개 지역사무소를 포함하여 약 17,000여명이다.

상업부 소속 해양대기청(NOAA)에 속한 국립해양수산물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160명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품질관리원이 근무하며, 검사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의뢰자가 부담한다.

표 3 환경보호청(EPA)의 조직체계

환경보호청장	행정자원관리 국장	
	대기방사능 국장	
	집행순응 국장	
	수식재정관	
	법률고문	
	감사관	
	국제 업무 국장	
	환경정보 국장	
	예방· 살충제 독극물국장	프로그램 운영실, 자원관리 담당, 연방등록 담당
		국제팀
		규제조정 담당
		정보교환 웹 담당
		살충제·독극물 특별지문
	연구개발 국장	
고형폐기물·긴급대응 국장		
수질 국장		
지역 사무소		
-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틀랜드, 시카고, 델라스, 캔자스시티, 덴버, 샌 프라시스코, 시애틀		

그림 3 해양대기청(NOAA)의 조직체계(2008.09)



2. 일본

주요특징

1996년 일본의 중앙성청(中央省廳) 등의 행정시스템 개혁을 위해 설치된 행정개혁회의는 1997년 12월 최종보고서에서 ‘식품위생 행정은 후생성이 담당하고 농수성은 후생성과 책임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긴밀한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내각부에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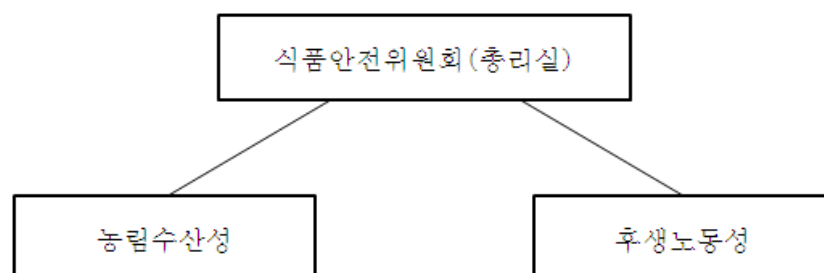
내각부는 동 보고서를 수용하여 1998년 개혁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농림수산성은 식품행정에 있어 후생성과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후생성은 약사행정, 공중위생행정, 식품위생행정 및 수도행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식품행정의 업무를 분장하였다.

일본은 2001년 BSE 발생으로 2003년 국회에서 위험분석의 도입과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채택하였다.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식품안전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위험평가’를 담당하게 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의약국’과 ‘식품보건부’를 ‘의약식품국’으로 통합하고 그 산하에 ‘식품안전부를 두는 것으로 개편하고 농림수산성은 식량청을 식량부로 축소하고 소비안전국을 신설하였다. 일본에서 안전성 관리는 단계별로 다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생산단계(농가, 농장, 어장)는 농림수산성에서 관리하며, 출하 이후 유통·가공·판매 단계는 후생노동성에서 분산되어 운영되는 체계이다.

일본 내각부는 1998년 개혁기본법을 제정하여 농림수산성과 후생성에 각 식품행정의 업무를 분장하였다.

2001년 BSE 발생으로 2003년 국회에서 위험분석의 도입과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채택하였다.

그림 4 일본 식품안전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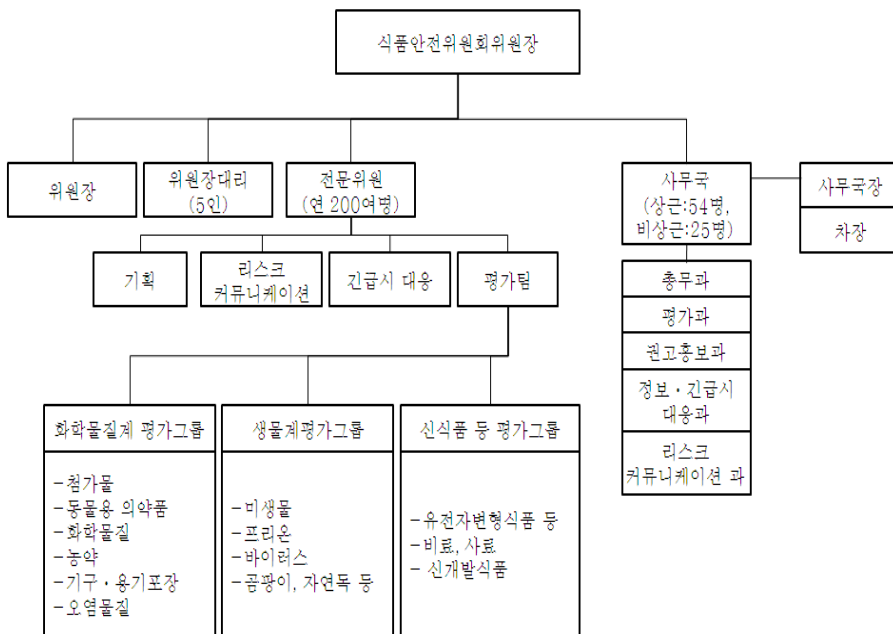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실시하는 7명의 민간 전문위원, 식품, 첨가물, 농약, 사료 등 분야별 위험평가를 위한 약 200명의 전문조사위원, 약 80명의 상근·비상근 직원의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식품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식품 중의 미생물과 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시책에 대한 권고, 위험정보교환을 실시하는 것이다. 위험 평가는 식품안전위원회 스스로 판단하거나,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으로부터의 자문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 식품안전위원회 조직체계(2008.10)



농림수산성 소비자안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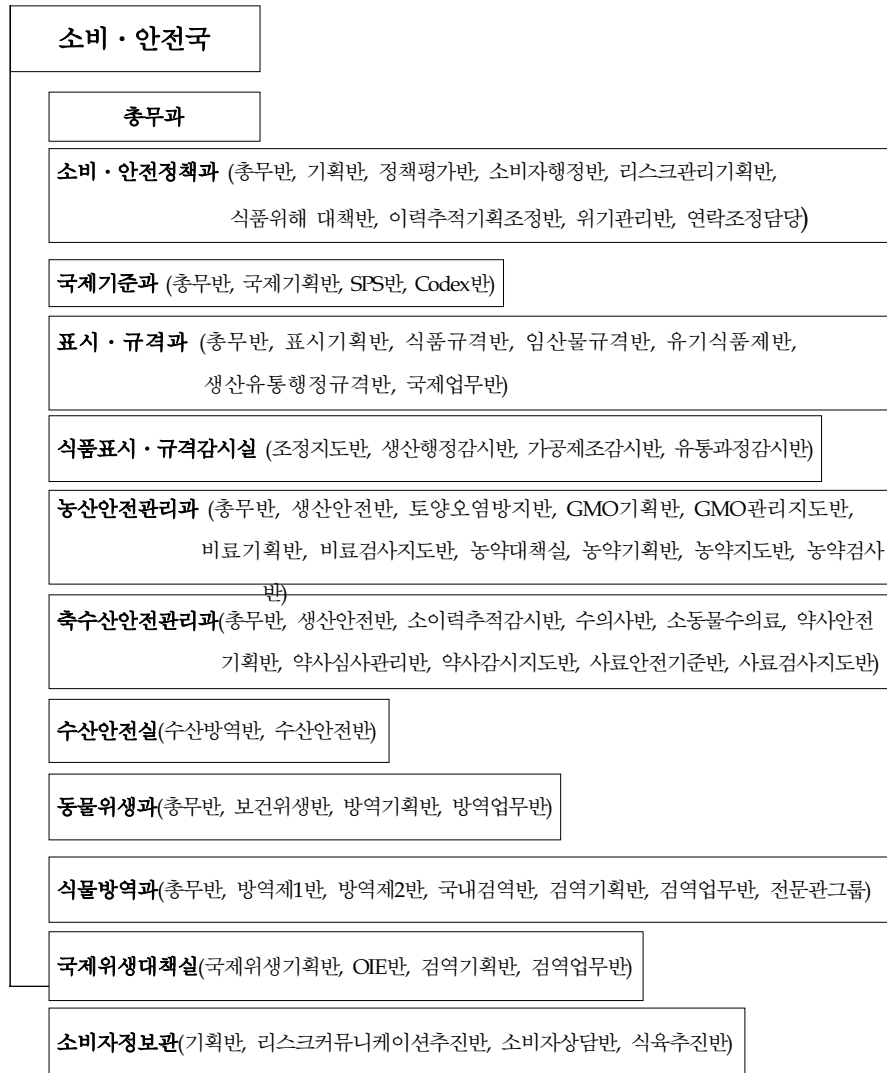
농림수산성 소비자안전국은 소비자보호, 표시·규격, 물가대책, 식품안전, 농림수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위험관리(농약, 비료, 사료, 동물, 동물용의약품 등), 토양오염방지, 위험정보교환 업무를 수행한다. 2007년 10월 1일자로 종래 농림수산성 소비

식품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식품 중의 미생물과 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시책에 대한 권고, 위험정보교환을 실시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성 소비자안전국은 소비자보호, 표시·규격, 물가대책, 식품안전, 농림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의 위험관리(농약, 비료, 사료, 동물, 동물용의약품 등), 토양오염방지, 위험정보교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국 축·수산 안전 관리과 수산 안전대책실에서 수행하던 수입허가업무가 동물검역소로 이관되고 수산 동물도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공항만 관할 동물검역소에서 서류심사와 함께 현물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추가되었다.

그림 6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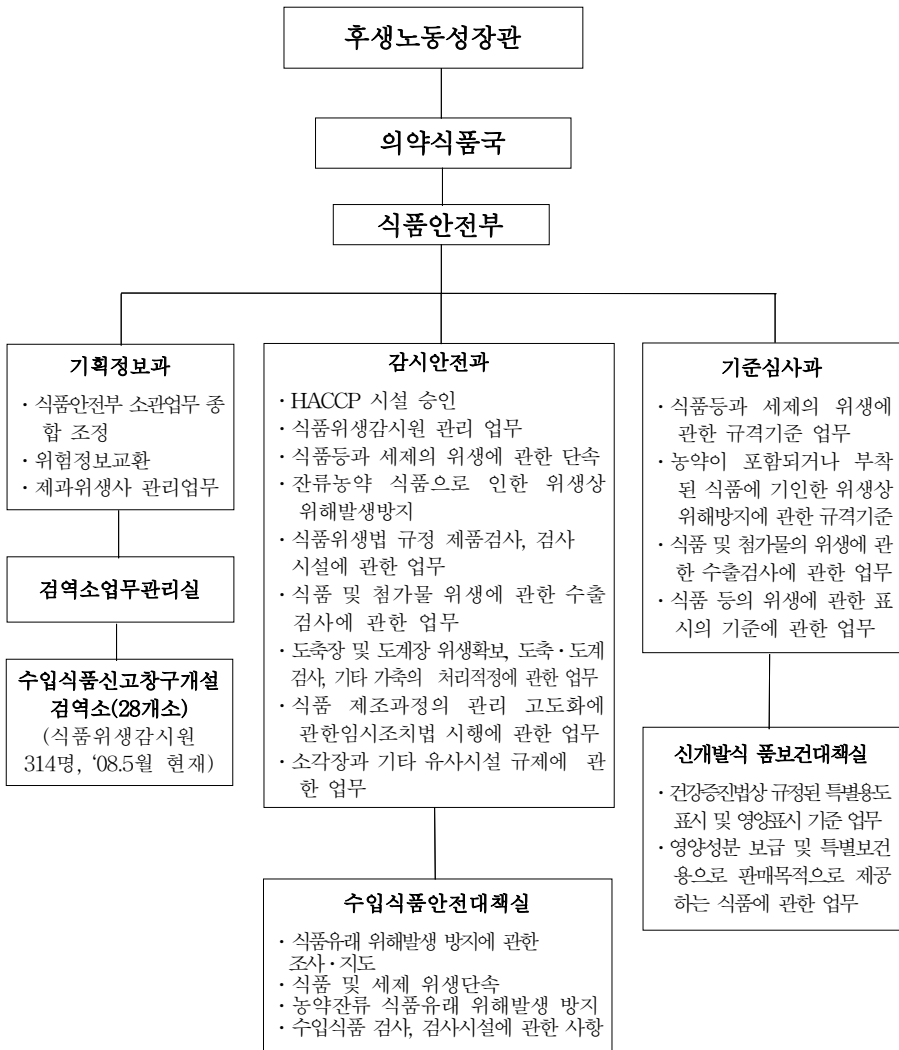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후생노동성은 일본 식품안전행정의 위험관리기관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위험평가에 근거 식품제조업자 등이 준수해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등의 규격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검역소를 통해 식품제조시설의 위생관리와 수입식품을 포함한 유통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감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일본 식품안전행정의 위험관리기관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7 후생노동성 식품안전 조직체계 (2008.10)



소비자청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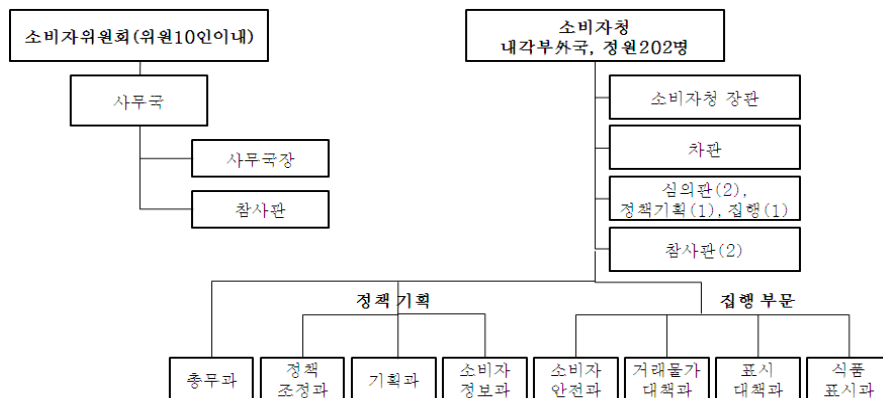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자, 2008년 4월 후쿠다 총리가 소비자행정을 총괄하는 「소비자청」 설립을 제안하였고, 9월 閣議(국무회의)에서 동 청 설립법안의 의회 상정을 결정하여 2009년 9월 내각부 소속으로 소비자청을 설립하였다.

일본은 국내 식품의 위장표시, 과대광고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최근 중국산 수입만두에서의 농약 성분 검출과 수입농식품에서의 멜라민 검출로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었다. 사회적으로 최근의 식품안전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와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8년 4월 후쿠다 총리가 소비자행정을 총괄하는 「소비자청」 설립을 제안하였고, 9월 閣議(국무회의)에서 동 청 설립법안의 의회 상정을 결정하여 2009년 9월 내각부 소속으로 소비자청을 설립하였다. 소비자청에서는 식품표시 등 소비자정책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의 표시관련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청이 담당할 식품표시관련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식품위생법 규정의 식품, 첨가물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 ② 식품위생법 규정의 허위의 또는 과대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 첨가물 등의 단속에 관한사항
- ③ 건강증진법에 규정한 특별용제표시, 영양표시기준 및 식품으로 판매하는 물건에 관한 표시에 관련된 사항
- ④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어서 농림물자의 품질에 관련된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 ⑤ 식품안전기준법에 규정한 기본적 사항의 책정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에 관한 사무의 조종에 관련된 사항
- ⑥ 소비생활동향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에 관한 사항 등

그림 8 일본 소비자청의 조직체계



참고자료

배종하, 최지현, 우병준, 한재환, 「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8

<http://www.usda.gov/>

<http://www.fda.gov/>

<http://www.aphis.usda.gov/>

<http://www.fsis.usda.gov/>

<http://www.epa.gov/>

<http://www.nmfs.noaa.gov/>

<http://www.maff.go.jp/>

<http://www.mhlw.go.jp/>

<http://www.fsc.go.jp/>